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87-490호('87. 11. 19.)	관세청 고시 제2001-39호('01. 8. 14.)
관세청 고시 제87-507호('88. 1. 5.)	관세청 고시 제2002-36호('02. 11. 14.)
관세청 고시 제88-533호('88. 8. 20.)	관세청 고시 제2003-28호('03. 7. 29.)
관세청 고시 제89-557호('89. 1. 20.)	관세청 고시 제2004-20호('04. 3. 10.)
관세청 고시 제89-570호('89. 4. 1.)	관세청 고시 제2005-40호('05. 12. 27.)
관세청 고시 제89-575호('89. 5. 24.)	관세청 고시 제2007-50호('07. 12. 26.)
관세청 고시 제90-613호('90. 2. 1.)	관세청 고시 제2009-42호('09. 8. 20.)
관세청 고시 제92-752호('92. 9. 30.)	관세청 고시 제2010- 9호('10. 2. 10.)
관세청 고시 제93-801호('93. 6. 4.)	관세청 고시 제2010-50호('10. 6. 10.)
관세청 고시 제93-828호('93. 11. 8.)	(전문개정)관세청 고시 제2010-128호('10. 12. 17.)
관세청 고시 제93-834호('93. 12. 28.)	관세청 고시 제2011-50호('11. 12. 20.)
관세청 고시 제94-882호('94. 6. 10.)	관세청 고시 제2013- 4호('13. 2. 5.)
관세청 고시 제94-906호('94. 12. 12.)	관세청 고시 제2013-67호('13. 7. 10.)
관세청 고시 제95-919호('95. 3. 20.)	관세청 고시 제2014- 9호('14. 1. 24.)
(제정) 관세청 고시 제96- 28호('96. 6. 24.)	관세청 고시 제2014-65호('14. 5. 20.)
관세청 고시 제97- 45호('97. 12. 30.)	관세청 고시 제2014-84호('14. 7. 1.)
관세청 고시 제98- 28호('98. 6. 29.)	관세청 고시 제2015-37호('15. 9. 30.)
관세청 고시 제98- 34호('98. 7. 23.)	관세청 고시 제2016-70호('17. 1. 5.)
관세청 고시 제98- 55호('98. 10. 20.)	관세청 고시 제2017-14호('17. 4. 4.)
(전문개정) 관세청 고시 제98- 69호('98. 11. 27.)	관세청 고시 제2017-70호('17. 11. 13.)
관세청 고시 제99- 82호('98. 12. 30.)	관세청 고시 제2018- 5호('18. 3. 5.)
관세청 고시 제99- 4호('99. 1. 19.)	관세청 고시 제2019-66호('19. 12. 31.)
관세청 고시 제99- 9호('99. 2. 22.)	관세청 고시 제2020-36호('20. 10. 14.)
관세청 고시 제99- 32호('99. 7. 30.)	관세청 고시 제2021- 4호('21. 1. 4.)
관세청 고시 제99- 41호('99. 10. 28.)	관세청 고시 제2022-19호('22. 5. 12.)
관세청 고시 제2000-28호('00. 7. 3.)	관세청 고시 제2023- 7호('23. 2. 1.)
(일괄개정)관세청 고시 제2001- 1호('01. 1. 12.)	관세청 고시 제2024- 20호('24. 4. 24.)
관세청 고시 제2001-15호('01. 3. 26.)	관세청 고시 제2024- 00호('24. 0. 0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관심사”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 “정식통관절차”란 목록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5. “목록통관절차”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6조 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 6의2.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7.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란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전자이미지 포함)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 전송”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4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17(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16.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사항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이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장 정식통관절차

### 제1절 수출신고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 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 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날 세관근무 시간 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그 밖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의3(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 받은 곳

② 영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12와 같다.

③ 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제9조(신고서의 배부)** ① 수출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출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심사자”라 한다)과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접수·심사 및 검사자의 미결사항을 수시점 검하고 신고서별로 미결 사유를 규명하여 수출통관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3. 물품검사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106조 및 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으로 수출 또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분석의뢰)**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분석대상 시료는 세관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고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보완요구)**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제3절 물품검사

**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17조(물품검사)** ① 법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 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45조에 따른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 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3(검사대상의 확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재화물목록상의 수출물품이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 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 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5(검사생략)** 세관장은 제17조의2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장소)**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1.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검사 입회)**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입회 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검사방법)**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 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제21조(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지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 제26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10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



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 이미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삭 제>

⑤ 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 ①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3조에 따른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실태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관시스템의 형식적 확인만으로 P/L신고 수리된 신고서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후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과 사후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 담당자가 처리한다.

## 제5절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 가. 적재예정정보세구역
  - 나. 적재항부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1의 자율정정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8조(승인의 통보)** 세관장은 신청자가 신청한 정정/취하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신청인에게 전산통보 할 수 있다.

**제29조(승인서의 교부)** 신청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정정/취하승인서를 출력하여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1조(직권 정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1. 신고내역이 잘못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분석결과가 수출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제32조(선상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4.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제조 HS 제72류 철강류(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물품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

1.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
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어패류를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보세판매장 수출신고)**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가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외국무역선 신고) <삭제>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식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3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의3(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등) <삭제>

#### 제35조의4(유효기간 및 갱신 등) <삭제>

**제35조의5(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나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제3장 목록통관 절차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목록** (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 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표 14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목록** (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송품장등 전송)**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 신고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제37조의3(우편물목록자료 전송)**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5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제38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통관목록등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목록통관 요건,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

③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등 특송업체별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비율을 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직원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검사결과 등록 등)**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을 심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에 별표 2 및 별표 5에 따른 고무도장을 날인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 **제42조(우편물목록의 특례) <삭제>**

**제43조(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① 해외 수출상당·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구두 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즉시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반출물품을 해외 수출상당·전시후 재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 또는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갈음 등)** ①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제5절은 제외한다)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장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제46조(휴대택송물품의 적재 관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택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택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택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 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제48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적재화물 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해당 항공기, 선박 등이 국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 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는 때
  2. 보세공장에서 새로 건조하여 수출하려는 때
- ② 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려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통상적인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 ③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 ④ 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또는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

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현지수출 어패류·원양수산물 등의 적재)**

현지수출 어패류·원양수산물 및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부 나용선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재 등록한다.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 ②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③ 수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동시 재포장한 수출물품을 제48조제3항에 의한 적재이행신고 시에는 특송업체가 동시포장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관리)** ①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 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제5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을 수출하려거나 수출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4. 법 제234조의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수출하려거나 수출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6.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때
7. 관세사등 신고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전산자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교부한 때
8.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제45조에 따른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때
9. 관세사등 신고인이 P/L 관련 서류를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때
10.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5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1-50호(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은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 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단서, 제10조제3항의 단서, 제17조의3,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 및 제23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4호(2013. 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67호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개별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4-44호(2014. 5. 20.) >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84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 단서규정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37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의2 규정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70호 (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14호 (2017. 4.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70호 (2017.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9-6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0-36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전자서명법」 공포안이 시행되는 날(20.1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1-4호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40조제2항, 별표 12 개정사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4-20호 (2024. 4.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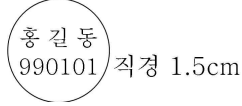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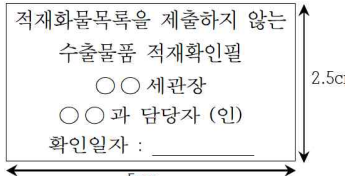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4-00호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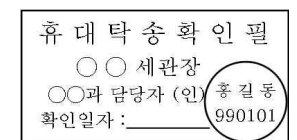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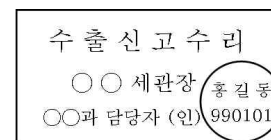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제1항, 제37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p>[별표 1] 삭제</p>	<p>[별표 2]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 (제22조제1항 관련)</p> 
<p>[별표 3] 삭제</p>	<p>[별표 4] 삭제</p>
<p>[별표 5] 목록통관신고수리 (제41조제3항 관련)</p> 	<p>[별표 6] 휴대탁송확인필 (제46조제2항 관련)</p> 
<p>[별표 7] 우편발송확인인 (제47조제1항 관련)</p> 	<p>[별표 8]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 적재확인인 (제48조제4항 관련)</p> 

< 사 용 례 >



[별표 9] 수출신고정정시 표준증빙 서류 (제26조제1항 관련)

항목번호	항 목 명	표준 증빙서류	비 고
2	수출대행자, 구분 수출화주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이 전부 변경시 1-1. 변경전 변경동의서 1-2. 변경전 인감증명서 (동일법인내 변경시는 생략) 1-3.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최초수입신고필증 2.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중 일부만 변경시 2-1.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표준증빙서류로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 관 장 이 요 구 하 는 자료  다만,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 정정인 신고인 오류가 명백한 경우로서 기타 서류(계약서·L/C·선적서류 등)에 의해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3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1. 제조자 내역이 전부 변경시 1-1. 변경전 제조자의 변경동의서 1-2. 변경전 제조자의 인감증명서(동일 법인내 변경시 생략) 1-3.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2. 제조자내역 중 일부만 변경시 2-1.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9	거래구분	1. 거래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가공계약서, 임대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수탁가공계약서, 산업설비수출승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10	수출종류	1. 당해업체 제조가공 증명 등 서류	
16	물품소재지	1.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관련 계약서	
21	환급신청인	1. 변경전 환급신청인의 변경동의서 2. 변경전 환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동일 법인내 변경시 생략) ※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화면심사 대상)	
22 22a	품명·규격 차대번호	1. 계약서, 송품장 및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입증서류(제품카탈로그, 제조공정설명서, 구매승인서, Local L/C, 기납증, 수입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30	세번부호	1. 신고서의 품명, 규격으로 세번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카탈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분석결과 회보서 등	
31	순중량	1.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중량 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바이어의 인수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B/L적재된 경우에 한함) 2.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32	수량	1.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수량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B/L 2.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 적재후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선적관리시스템에 선적된 수량(포장갯수, 중량) 확인 후 정정	
33	신고가격(FOB)	1. 계약서 또는 L/C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표준증빙서류는 서류제출대상이므로 지정된 주요항목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기타 항목 중 정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요구 가능

[별표 10] 적재지검사 안내문 (제22조제4항 관련)

동 물품은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선박·항공기에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후 적재지 관할세관에 검사 요청하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받을 수 있음.

[별표 11] 자율정정 제외대상 (제26조제2항 관련)

항 목 명	정정 항목명	비 고
수출화주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	제조자상호	
거래구분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	
품명	품명	
상표명	상표명	
세번부호	세번부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원산지	원산지	FTA C/O 발급여부 정정은 자율정정 대상
수출요건확인	요건승인번호	
적제의무기간	적제의무기간	
신고가격	신고가격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총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별표 12] 보세구역등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제7조의3제2항 관련)

연번	종 류	품목명	대상
1	중고자동차	87류 중 '중고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2	플라스틱 폐기물	HS 3915호 (플라스틱 스크랩)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트·스크랩
3	생활폐기물	HS 3825호 (생활폐기물 등)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

[별표 1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제35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간이)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아래 항목들을 해당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 「⑩적재항」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공항명을 기재한다.
- 「⑪구매자」 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목은 생략하고 구매자명을 기재한다.
- 「⑫제출자」 기재항목은 제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부호를 기재한다.
- 「⑬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기재항목은 수출물품이 실제 판매된 웹페이지 전체 주소를 기재한다.
- 「⑭물품소재지」 기재항목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 기본주소 (도로명까지) 및 소재지 명칭을 기재한다.
- 「⑮제조사」 기재항목은 「란」 별로 기재하며 제조자명,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 「⑯환급신청인」 기재항목은 「란」 별로 기재한다.
- 「⑰수출자구분」 기재항목은 「란」 별로 기재한다.
- 「⑱수량」 기재항목은 수량을 단위 EA(으)로 기재하고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중량을 단위 KG(으)로 기재한다.
- 「㉑단가」 기재항목은 미화(USD)로 기재한다.
- 「㉒금액」 기재항목은 미화(USD)로 기재한다.
- 「㉓순중량」 기재항목은 단위 KG(으)로만 기재한다.
- 「㉔수량」 기재항목은 단위 EA(으)로 기재하고 수량이 없는 경우 0을 기재한다.
- 「㉕조정금액」 기재항목은 할인받은 금액을 원화로 기재가능하다.
- 「㉖총중량」 기재항목은 수출신고서의 총중량을 단위 KG(으)로 기재한다.
- 「㉗총포장개수」 기재항목은 단위 EA(으)로 기재한다.
- 「㉘총조정금액」 기재항목은 할인받은 총금액을 원화로 기재가능하다.
- 「㉙결제금액」 기재항목은 실제 결제한 금액으로 (총신고가격+운임-총조정금액)을 기재한다.
- 「㉚주문번호」 기재항목은 필수항목으로 주문관련번호를 기재한다.
- 「㉛배송번호」 기재항목은 선택항목으로 배송번호를 기재한다.
- 「㉜운송인」 기재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배송을 담당할 특송업체 등을 기재한다.

[별표 14] 통관목록 작성요령 (제37조 관련)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 건
1. 제출세관 / 과	○ 특송업체가 취급하는 수출물품을 집하·보관하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 과 코드를 기재	- 040C3 (인천공항/통관검사3과)	필수
2. 출항일시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의 출항일시를 기재	- 202304012310	필수
3. 특송업체명	○ 특송업체 부호 기재 ※ 11. 제출번호(특송업체부호 6자리 포함) 기재로 대체	- AE0000	필수
4. 항공편명/선박항차	○ 수출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편명 또는 선박의 항차	- KE1234 - 23ABCDE001E	필수
5. 적재항	○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5자리)·공항부호(3자리)를 기재 (※ 관세청 무역통계부호-항구 및 공항 부호 참조)	- ICN/KRPUS	필수
6. 목적국	○ 수출물품 최종 도착국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를 기재 - (항공) ISO국가코드(2자리) + IATA도시코드(3자리) - (해상) UN/LOCODE(5자리)	- JPNRT/SAKAC	필수
7. Master AWB(B/L) no	○ 항공사 또는 선사가 발행한 Master AWB(B/L) 번호 기재	- 98812341234	필수
8. 물품소재지	○ 수출물품을 집하·보관하는 업체 창고 소재지의 주소를 우편번호(5자리)를 포함하여 기본주소(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그다음 상세주소와 장치장소 명칭(업체 상호)을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123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 oo물류창고	필수
9.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 소재지 검사 희망 여부를 Y/N으로 기재	- Y	필수
10. 물품소재지검사 신청 사유	○ 소재지 검사를 신청(Y)한 경우에만 필수로 그 사유를 기재	- 출항시간 촉박	선택
11. 제출번호	○ 통관목록 제출번호를 기재 특송업체부호(6자리)+년도(4자리)+일련번호(8자리) ※ 일련번호 :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	- AE0001-2023-00000001	필수
12. House AWB(B/L) no	○ 특송업체가 발행한 House AWB(B/L)번호 기재	- ABCD76527023AB01	필수
13. 수출자	○ 수출회주가 업체인 경우 상호명용,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GWANSE CO - HONGGILDONG	필수
14.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 수출 거래코드가 01(전자상거래)인 경우 수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기재 ※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 123-45-67890	선택
15. 수취인	○ 물품 수취인이 업체인 경우 상호명용,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GWANSE CO - HONGGILDONG	필수
16. 반출사유	○ 아래 해당사유의 2자리 코드 기재 - AA: 유해,유골 - BB: 외교행낭 - CC: 제외공관물품 - DD: 외국원수물품 - EE: 보도용품 - FF: 기록문서,서류 - GG: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이하의 탁송물품 - HH: 해외직구 반품물품	- GG	필수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조건
17. 거래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거래 형태에 따라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li> <li>- 01: 전자상거래 수출</li> <li>- 02: 기업건품</li> <li>- 03: 자가사용물품 (해외직구물품) 반품</li> <li>- 99: 기타</li> </ul>	- 01	필수
18. 세번부호(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물품의 품목번호 2단위 필수 기재</li> <li>-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HSK 10단위 필수 기재</li> </ul>	- 33 - 3304201000	필수
19. 품명·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명·규격을 정확히 기재</li> <li>- 상이한 물품의 경우 각각의 품명·규격을 기재</li> <li>※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예, SAMPLE 등)을 기재하면 안됨</li> </ul>	- WOMAN SHOES	필수
20. 수량(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반출되는 수량을 기재</li> </ul>	- 7	필수
21. 포장개수(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출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li> </ul>	- 2	필수
22. 총중량(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li> <li>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li> </ul>	- 5.1	필수
23. 가격(F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li> </ul>	- 75,000	필수

[별표 15] 우편물목록 작성요령 (제37조의3 관련)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조건
1. 통관우체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이 발송되는 통관우체국명을 기재</li> </ul>	- 국제우편물류센터	필수
2. 우편물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번호를 기재</li> </ul>	- EA123456789KR	필수
3. 접수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을 접수한 일자를 기재</li> </ul>	- 20230801	필수
4. 우편물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우편물종류에 따른 번호를 기재</li> <li>1. EMS 2. 소포 3. 등기통상 4. 일반통상 5. 기타</li> </ul>	- 1	필수
5. 우편물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우편물구분에 따른 번호를 기재</li> <li>1. 상용물품 2. 전자상거래물품 3. 선물 4. 견본품 5. 반송 6. 기타</li> </ul>	- 1	필수
6. 운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운송방법에 따른 번호를 기재</li> <li>1. 항공 2. 해상</li> </ul>	- 1	필수
7. 목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이 도착하는 영문 국가코드(ISO코드) 를 기재</li> </ul>	- US	필수
8. 총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 총 중량(포장무게 포함)</li> <li>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li> </ul>	- 2.3	필수
9. 발송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인 경우 상호명,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li> <li>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li> </ul>	- 홍길동 - 洪길동무역	필수
10. 발송인 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li> <li>※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li> </ul>	- 123-45-67890	선택
11. 발송인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된 발송인 주소를 기재</li> <li>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li> </ul>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302호	필수
12. 발송인 우편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번호를 기재</li> </ul>	- 12345	필수
13. 발송인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기재</li> </ul>	- 010-9876-5432 - 02-123-4567	필수
14. 수취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는 이름 또는 상호명을 기재</li> <li>영문으로 기재</li> </ul>	- ADAM SMITH - TESLA	필수
15. 수출신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번호를 기재</li> </ul>	- 12345-23-789456X	선택
16.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li> <li>동일 포장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li> <li>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li> </ul>	- 스마트폰 케이스 - BOOK	필수
17. 일련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 품명인 경우, 란 번호를 기재</li> </ul>	- 2	필수
18. 세번부호(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HS입력</li> <li>※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HS 10단위 기재 필요</li> </ul>	- 2106909099	선택
19.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된 수량을 기재</li> </ul>	- 10	필수
20. 물품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기재</li> </ul>	- 200	필수
21. 통화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가격 통화단위를 기재</li> </ul>	- USD	필수
22.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표지에 기재된 원산지를 기재</li> </ul>	- KR	선택
23. 제출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우편물목록을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일자</li> </ul>	- 20230101	필수







#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	⑥세관.과 999-99	⑦신고일자 YYYY/MM/DD	⑧신고구분 X	⑨C/S구분 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수출자구분 X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⑩거래구분 XX	⑪종류 X	⑫제재방법 XX
③제조사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번호 XXX			⑬목적 XXXXXXX	⑭적재항 XXXXXXX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
④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번호) XXXXXXXXXX			⑯운송형태 XX XXX	⑰출항예정일자 XXXXXXX	⑱적재예정보세구역 XXXXXXX
⑥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⑲운송상태 XXX	⑳검사회망일 YYYY/MM/DD	㉑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
⑦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			㉒L / C 번호 XXXXXXXXXXXXXXX	㉓물품상태 X	㉔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X
⑧모델·규격			㉕현금신청인 X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2: 제조자)	㉖반송 사유 XX	㉗자동안이정액환급 XX
⑨세번번호 9999.99-9999			㉘상표명 XXXXXXXXXXXXXXX		
⑩승품장번호 XXXXXXXXXX			㉙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⑪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㉚성분	㉛수량	㉜단가(XXX)
⑫총중량 999.999.999(XX)			㉝단가(XXX)	㉞금액(XXX)	
⑬신고가격(FOB) ₩999,999,999			⑭신고가격(FOB) \$999,999,999		
⑮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⑯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⑰환산지 XX-X-X	⑱포장갯수(종류) XXXXXXXXXX
⑲총중량 999.999.999(XX)			㉒총포장갯수 999.999(XX)	㉓신고가격(FOB) ₩999,999,999	㉔신고가격(FOB) \$999,999,999
⑳보통료(W) 999.999.999			㉕결제금액 XX-XXX-999.999.999.999		
㉖수입화물관리번호 XXXXXXXXXXXXXXX			㉗렌데이타번호 XXXXXXXXXX		
*신고기재란			*세관기재란		
㉘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			㉙적재의무기한 YYYY/MM/DD		
㉚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㉛당당자 XXXXX(XXXXXX)		

발행번호 : 99999999999999(YYYY.MM.DD) Page : 999/999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 tps://uni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1)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 tps://uniipass.customs.go.kr)



# 수출신고필증(적재전, 을지)

※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	⑥세관.과 999-99	⑦신고일자 YYYY/MM/DD	⑧신고구분 X	⑨C/S구분 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수출자구분 X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⑩거래구분 XX	⑪종류 X	⑫제재방법 XX
③제조사 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번호 XXX			⑬목적 XXXXXXX	⑭적재항 XXXXXXX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
④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번호) XXXXXXXXXX			⑯운송형태 XX XXX	⑰출항예정일자 XXXXXXX	⑱적재예정보세구역 XXXXXXX
⑥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⑲운송상태 XXX	⑳검사회망일 YYYY/MM/DD	㉑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
⑦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			㉒L / C 번호 XXXXXXXXXXXXXXX	㉓물품상태 X	㉔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X
⑧모델·규격			㉕현금신청인 X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2: 제조자)	㉖반송 사유 XX	㉗자동안이정액환급 XX
⑨세번번호 9999.99-9999			㉘상표명 XXXXXXXXXXXXXXX		
⑩승품장번호 XXXXXXXXXX			㉙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⑪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㉚성분	㉛수량	㉜단가(XXX)
⑫총중량 999.999.999(XX)			㉝단가(XXX)	㉞금액(XXX)	
⑬신고가격(FOB) ₩999,999,999			⑭신고가격(FOB) \$999,999,999		
⑮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⑯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⑰환산지 XX-X-X	⑱포장갯수(종류) XXXXXXXXXX
⑲총중량 999.999.999(XX)			㉒총포장갯수 999.999(XX)	㉓신고가격(FOB) ₩999,999,999	㉔신고가격(FOB) \$999,999,999
⑳보통료(W) 999.999.999			㉕결제금액 XX-XXX-999.999.999.999		
㉖수입화물관리번호 XXXXXXXXXXXXXXX			㉗렌데이타번호 XXXXXXXXXX		
*신고기재란			*세관기재란		
㉘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			㉙적재의무기한 YYYY/MM/DD		
㉚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㉛당당자 XXXXX(XXXXXX)		

발행번호 : 99999999999999(YYYY.MM.DD) Page : 999/999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 tps://uni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1)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 tps://uniipass.customs.go.kr)











# (간이)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감지)

\*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E	⑥세관.과 999-99	⑦신고일자 YYYY/MM/DD	⑧C/S구분 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주소) XXX (대표자) XXXXXXXXXXXX (우편번호) 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사업자등록번호구분) XX		⑦거래구분 XX		⑧결재방법 XX
③품명 XXX		⑨목적국 XX		⑩적재항 XX
④제조사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⑪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⑫제출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⑬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⑭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⑮물품소재지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⑯환급신청인 X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2: 제조자) 자동안이정액환급 XX				
⑰수출자 구분 X				
⑱모델·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⑲수량(EA)		⑳단가(USD)		㉑금액(USD)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
모델·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㉒세번번호 9999.99-9999	㉓순중량(KG) 999,999,999.999	㉔수량(EA) 9,999,999,999	㉕금액(USD) \$999,999,999	
㉖조정금액(W) 999,999,999	㉗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신고가격(FOB) ₩999,999,999	
㉙총중량(KG) 999,999,999	㉚총포장갯수(EA) 999,999	㉛총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㉜총신고금액(W) ₩999,999,999,999	
㉝운임(W) 999,999,999	㉞총조정금액(W) 999,999,999	㉟총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㊱주문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㊲배송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신고인기재란 XX XX XX XX XX		㊳세관기재란 XX XX XX XX XX		
㊴운송인 XXXXXX	㊵적재의무기한 YYYY/MM/DD	㊶담당자 XXXXX(XXXXX)	㊷신고수리일자 YYYY/MM/DD	

발행번호 : 99999999999999(YYYY.MM.DD)

Page : 999/999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 tps://un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 tps://unipass.customs.go.kr)



# (간이)수출신고필증(적재전, 을지)

\*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E	⑥세관.과 999-99	⑦신고일자 YYYY/MM/DD	⑧C/S구분 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우편번호) 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사업자등록번호구분) XX		⑦거래구분 XX		⑧결재방법 XX
③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⑨목적국 XX		⑩적재항 XX
④제조사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⑪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⑫제출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⑬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⑭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⑮물품소재지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
⑯환급신청인 X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2: 제조자) 자동안이정액환급 XX				
⑰수출자 구분 X				
⑱모델·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⑲수량(EA)		⑳단가(USD)		㉑금액(USD)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
모델·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㉒세번번호 9999.99-9999	㉓순중량(KG) 999,999,999.999	㉔수량(EA) 9,999,999,999	㉕금액(USD) \$999,999,999	
㉖조정금액(W) 999,999,999	㉗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신고가격(FOB) ₩999,999,999	
㉙총중량(KG) 999,999,999	㉚총포장갯수(EA) 999,999	㉛총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㉜총신고금액(W) ₩999,999,999,999	
㉝운임(W) 999,999,999	㉞총조정금액(W) 999,999,999	㉟총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㊱주문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㊲배송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신고인기재란 XX XX XX XX XX		㊳세관기재란 XX XX XX XX XX		
㊴운송인 XXXXXX	㊵적재의무기한 YYYY/MM/DD	㊶담당자 XXXXX(XXXXX)	㊷신고수리일자 YYYY/MM/DD	

발행번호 : 99999999999999(YYYY.MM.DD)

Page : 999/999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 tps://un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 tps://unipass.customs.go.kr)

















[별지 제7호서식]

<b>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b>			처리기간
			즉 시
1. 수출신고번호		2. 신고일자	
3. 신청인	(상호) (성명) (서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출화주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4 수출화주	(상호) (성명)		
5. 신청사유 및 용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b>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b>				처리기간
* 접수번호 :				1일
수출화주	①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② 대 표 자		⑤ 통관고유부호	
	③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적 재 물 품		⑦ H.S 번호(6단위)	⑧ 품 명	
⑨ 신 청 사 유		(예시) 유동성 액체로서 적재상태로 검량 통관키 위함.		
* 유효 기간		월 일	* 비 고	

위와 같이 「관세법」 제140조제6항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없음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 . . .

○ ○ 세 관 장 적인

\* 표시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보완요구서(보완사항 통보)**

1. 신고번호 99999-YY-9999999 (20 . . . 신고, 신고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요구하오니 20 .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완요구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관보류 또는 신고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보완요구 사유 :

2. 보완요구 사항 :

##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검사 입회 신청(통보)서

1. 신고번호		2. 신고일자	
2. 신고인 (신청인)	(상호)	(성명)	
	(전화번호)		
3. 입회 희망자	(상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신청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4. 입회희망 일자	20 년	월	일
5. 입회신청 사유 (검사시 요청사항)			
6. 검사 예정 일시			
7. 검사 예정 장소			
8. 입회 신청 접수 확인	(접수일시)	20 년	월 일 시
	(접수세관)	세관                    과	
	(접수자)	(서명)	
9. 검사 입회 통보 확인	(통보일시)		
	(통보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교부 <input type="checkbox"/> 우편통보 <input type="checkbox"/> 이메일통보		
	(통보확인)		
	통보서 수령자 또는 우편발송번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우편발송번호(이메일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대한민국 송품장 (제7조의2제1항 관련)

I. 일반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구비요건, 원산지, 지식재산권(상표 등) 등은 송품장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출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출화주는 송품장 기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별지 제11-1호(대한민국송품장) 서식은 실제 무역업무 수행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수출화주가 종이서식에 의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등)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동 서식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 또한 동 서식은 별지 제11-2호(전자인보이스)를 출력할 때 사용한다.
- 별지 제11-2호(전자인보이스)는 송품장을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서식이다.

II. 대한민국 송품장 서식 기재요령

1. Shipper(Exporter)/ 수출자(화주)의 상호 및 주소 기재
2. Invoice No and date /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자 기재
3. Other references / 구매주문서, 계약서, 신용장 등의 참조문서명 및 참조번호 기재
4. Consignee /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 기재
5.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구매자 상호 및 주소 기재
  - \* 구매자와 수하인(4번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기재
6. L/C No and date /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자 기재
  - \* 신용장 거래방식이 아닌 경우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
7. Country of origin / 물품의 원산지 국가명 기재
  - \* 원산지는 상품이 제배,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말함
8. Transport details / 국제운송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
  - ① Mode of transport : 운송방법(해상·항공·철도·트럭 등)
  - ② Vessel name(or Flight No)/선박명(또는 항공편명)
  - ③ Voyage No/항차번호(선박의 경우)
  - ④ Departure date/출항일자
  - ⑤ Place of loading/선적지
  - ⑥ Place of discharge/ 양륙지
  - ⑦ Place of delivery/물품 인도장소

- ⑧ Place of transhipment/환적지
- ⑨ Freight payment method / 운임지급방법(선불 또는 후불 여부)
  - \* ② ③ ④ ⑤ ⑥ 및 ⑧은 임의기제사항으로서 선택적 기재

9.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물품인도조건 및 대금지급조건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기재

-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 / 무역거래조건 부호 및 지역명  
예) "FOB", New York
-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 대금지급 조건 기재  
예) L/C Base, Payment within 15 days and 3% cash discount or 30 days net.

10. Specification of commodities / 상품에 내용을 기술하는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

- ① Line No/상품별 란 일련번호
- ② Specification of commodities / 상품명·규격·모델·성분·등급·질·상표 등 일반적 상품명세
- ③ Quantity / 수량 및 수량단위
- ④ Unit price/통화종류, 단가 및 수량단위(예: USD 1,000/PCS)
- ⑤ Amount of price/통화종류 및 가격금액(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 \* 감지에 모두 기재되지 않는 경우 울지에 연속해서 기재

11. Total weight / 총중량을 기술하는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

- ① Gross weight / 총중량 및 중량단위
  - \*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 기재
- ② Net weight / 총순중량 및 중량단위
  - \* 포장을 제외한 순중량 기재

12. Total amount of price / 지급통화 부호 및 전체물품가격을 기재

13. Cost details / 운임 및 보험료를 기재

14. Packing details / 포장에 대한 기술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

- ① Package code/포장형태부호
- ② Package name/포장형태명
- ③ Total packages/전체 포장갯수
  - \* Package code는 임의기제 사항이며, 산물상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14번 항목 전체를 기재생략

[별지 제11-1호서식]

세관제출번호 관세상사1971015-1-07-12345678		대한민국 세관 송품장(수출용) (KOREA CUSTOMS INVOICE)		(갑지) Page of	
1. Shipper(Exporter) / 수출자 상호 및 주소		2. Invoice No and Date /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자			
		3. Other references / 구매주문서 등 참조문서명 및 그 번호			
4. Consignee / 수하인 상호 및 주소		5.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구매자 상호 및 주소(수하인과 다른면 기재)			
6. L/C No and Date /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자		7. Country of origin / 물품의 원산지 국가명			
8. Transport details / 운송내역		9.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인도 및 지급 조건			
Mode of transport/운송방법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 /인코텀즈 값( 무역거래조건 부호) 및 지역명			
Vessel name(or Flight No) /선박명(또는 항공편명)		Incoterms value			
Voyage No/항차번호		Location name			
Departure date/출항일자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대금지급 조건 및 사항			
Place of loading/선적지		Payment terms			
Place of discharge/ 양륙지		Payment conditions			
Place of delivery/인도장소					
Place of transshipment/환적지					
Freight payment Method /운임지급방법					
10. Specification of commodities(in code and/or in full) / 상품명세					
Line No /일련번호	Specification of commodities(General description and characters, I.e. grade, quality) / 상품명세	Packing No /포장번호	Quantity /수량	Unit price /단가	Amount of price /가격
11. Total weight / 전체 중량		12. Total amount of price/ 전체물품가격		13. Cost details / 비용내역	
G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총순중량	Currency code /지급통화부호	Total amount /금액	Freight /운임	Insurance /보험료
14. Packing details / 포장내역					
Package code /포장형태부호		Package name /포장형태명		Total packages /전체 포장갯수	



대한민국 세관 송품장(수출용)  
(KOREA CUSTOMS INVOICE)

(을지)  
Page of

Line No /일련 번호	Specification of commodities(General description and characters, I.e. grade, quality) / 상품명세	Packing No /포장번호	Quantity /수량	Unit price /단가	Amount of price /가격



[별지 제11-2호서식]

전자인보이스

항목 번호	항목명	TYPE	SIZE	조건	작성예	비고
키값	세관제출번호 - 통관고유번호 - 문서구분 - 연도 - 제출번호	AN.. AN.. AN.. AN..	15 1 2 8	M M M M	관세상사1971015-I-07 -12345678	수출입자의 통관고유번호 "I"=Invoice 해당 년도의 끝 2자리 입력 제출자가 생성한 일련번호
	1 Shipper/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상호 - 수출자의 주소	AN.. AN..	80 550	M M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
	2 Invoice No and Date(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 - 송품장 번호 - 송품장 발행일자	AN.. AN..	35 8	M M		사용자가 정의한 문서번호 문서 생성일자
	3 Other references(참조문서) - 참조문서명 - 참조문서 번호	AN.. AN..	35 35	C C		"Order No." 참조번호의 관련문서명 참조문서의 번호
4 Consignee(수하인) - 수하인 상호 - 수하인 주소	AN.. AN..	80 550	M M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		
5 Buyer(구매자) - 구매자 상호 - 구매자 주소	AN.. AN..	80 550	C C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		
6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 - 신용장 번호 - 신용장 발행일자	AN.. AN..	20 8	C C	신용장 발행번호 문서 생성일자		
7 Country of origin of goods[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 국가부호 - 원산지 국가명	AN.. AN..	5 80	M M	"FR" "FRANCE"	물품의 원산지 국가코드 (ISO3166 코드 입력) 물품의 원산지 국가명	
8	Transport details[운송내역] - Mode of transport(운송방법) - Vessel name(선박명-항공편명) - Voyage No(항차번호) - Departure date(출항일자) - Place of loading(선적지) · 선적지 코드 · 선적지명 - Place of discharge(양륙지) · 양륙지 코드 · 양륙지명 - Place of delivery(인도장소) · 인도장소 코드 · 인도장소명 - Place of transshipment(환적지)	AN.. AN.. AN.. AN.. AN.. AN.. AN.. AN.. AN.. AN.. AN.. AN..	35 35 35 8 25 80 25 80 25 80 25 80	M C C C C C C C C C M M	"By Vessel", "AIR" "Oriana" "9901", "9902" "20070326" "JPYOK", "MYJHB" "Yokohama" "JPYOK", "MYJHB" "Yokohama" "JPYOK", "MYJHB" "Yokohama"	선박(또는 항공기)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출발지) 코드 물품의 선적지(출발지)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 물품의 도착(인도)지 코드 물품의 도착(인도)지명 물품의 환적지 코드

항목 번호	항목명	TYPE	SIZE	조건	작성예	비고
	· 환적지 코드 · 환적지명 - Freight payment Method(운임지급방법)	AN.. AN.. AN..	25 80 80	C C M	"JPYOK", "MYJHB" "Yokohama" "Collect"	물품의 환적지명 운임지급방법(선불/후불)
	9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인도 및 지급 조건]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무역거래 조건 부호 및 지역명) - Incoterms value - Location name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대금지급 조건 및 사정) - Payment terms - Payment conditions	AN.. AN.. AN.. AN.. AN.. AN..	35 80 80 80 80	M M M M C	"FOB" "New York"	Buyer와 Seller 협의한 조건 사용자 정의 지급 조건
	10 Specification of commodities[상품명세] - Line item No(란번호) - Specification of commodities(상품명세) - Packing No(포장번호) - Quantity(수량) · 수량 · 수량단위 - Unit price(단가) · 단가금액 · 단가 통화단위 - Amount of price(가격) · 가격금액 · 가격 통화단위	N.. N.. AN.. N.. N.. N.. N.. N.. N.. N..	5 500 35 15 10 21 5 35 5	M M C M M M M M M		* 1~9999회까지 반복가능
11 Total weight[전체 총량] - Gross weight(전체 총중량) · 전체 총중량 · 전체 총중량 단위 - Net weight(전체 순중량) · 총순중량 · 총순중량 단위	N.. AN.. AN.. N.. AN..	21 10 10 21 10	M M M M M	"2000" "KGS"	포장무게를 포함한 화물중량 포장무게를 공제한 화물중량	
12 Total amount of price[전체 물품가격] - Currency code(지급통화부호) - Total amount(금액)	AN.. N..	5 35	M M			
13 Cost details[비용내역] - Freight(운임) · 통화부호 · 금액 - Insurance (보험료) · 통화부호 · 금액	AN.. N.. AN.. N..	5 21 5 21	C C C C		* 기타비용 항목은 1~10회 까지 반복 가능	
14 Package details[포장내역] - Package code(포장형태부호) - Package name(포장형태명) - Total packages(전체 포장 개수)	AN.. AN.. N..	35 35 15	C C C	"350" "Box", "Crate"	포장형태부호를 입력 포장 개수를 입력	

\*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N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AN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SIZE	999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필수 기재항목
	C	-선택 기재항목
	X	-기재 불필요 항목

[별지 제12호서식]

처리기간 : 3일			
<b>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b>			
신청인	상 호		대 표
	주 소		
	통 관 고유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종합인증업체 공 인 내 역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업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 . . . . 신 청 인 :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4호 서식] (삭 제)



###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xx-xxxxx

신청일자 : YYY년MM월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청자 : (상호) xxxxxxxxxxx

(성명) xxxxxx

제목 :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통관 임시개청을 신청(통보)합니다.

다 음

1. 임시개청신청시간 : 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
2. 임시개청사유 :
3. 수출예정건수 :
4. 임시개청신청 물품

① 수출신고번호	② 수출화주	③ 수출금액(US\$)	④ 포장개수	⑤ 총중량

※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둘 수 있음.

\* 문서번호체계 : 신고인부호(5) + 연도(2) + 일련번호(5)

###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세관/과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인	
수출자상호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주소			
수취인상호		목적국	
수취인주소			
품명/규격			
포장개수(CT)		중(수)량	
가격		거래코드	
물품소재지			

위와 같이 「관세법」 제241조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의2에 따라 송품장에 의한 목록통관수출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 송품장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신고수리합니다.

20 . . . .

○ ○ 세 관 장

직인

[ 별 표 ]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1) 일반사항

가.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납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서에도 동일하다)

나.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서집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다.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 『란』 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라.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마.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통계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주요 부품(A/S 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 방식(Knock Down방식) 수출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델·규격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개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개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사)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차. 수출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출신고서(보관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카. 수출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 수출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타. 수출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제출번호, ①과 ⑤~⑧ 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파.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개 정 >

- 「③제조사」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부호」 항목
- 「④구매자」 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목
- 「⑨C/S구분」 기재항목

- 「11종류」 기재항목
- 「14적재항」 기재항목
- 「15선박회사(또는 항공사)」 기재항목
- 「16선박명(또는 항공편명)」 기재항목
- 「17출항예정일자」 기재항목
- 「18적재예정정보세구역」 기재항목
- 「19운송형태」 기재항목
- 「20검사희망일」 기재항목
- 「21물품소재지」 기재항목 중 「장치장부호」, 「반입번호」 항목
- 「22L/C번호」 기재항목
- 「23물품상태」 기재항목
- 「24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기재항목
- 「25반송 사유」 기재항목
- 「27품명」 기재항목
- 「29상표명」 기재항목
- 「31성분」 기재항목
- 「39송품장번호」 기재항목
- 「40수입신고번호」 기재항목
- 「41원산지」 기재항목 중 「결정기준」, 「표시여부」 항목
- 「42포장개수」 기재항목
- 「43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기재항목
- 「47운임」 기재항목
- 「48보험료」 기재항목
- 「50수입화물관리번호」 기재항목
- 「51컨테이너번호」 기재항목
- 「53운송(신고)인」 기재항목
- 「54기간」 기재항목
- 비환급대상건의 경우 「3제조사」 기재항목 중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제조자 일련번호 항목, 「31성분」 기재항목

가. 제33조의2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3제조사」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부호」 항목

- 「9C/S구분」 기재항목
- 「12결제방법」 기재항목
- 「14적재항」 기재항목
- 「15선박회사(또는 항공사)」 기재항목
- 「16선박명(또는 항공편명)」 기재항목
- 「19운송형태」 기재항목
- 「21물품소재지」 기재항목 중 「장치장부호」, 「반입번호」 항목
- 「22L/C번호」 기재항목
- 「23물품상태」 기재항목
- 「24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기재항목
- 「25반송 사유」 기재항목
- 「26환급신청인」 기재항목
- 「31성분」 기재항목
- 「39순증량」 기재항목
- 「39송품장번호」 기재항목
- 「40수입신고번호」 기재항목
- 「42포장개수」 기재항목
- 「43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기재항목
- 「44총증량」 기재항목
- 「45총포장개수」 기재항목
- 「46총 신고가격」 기재항목
- 「47운임」 기재항목
- 「48보험료」 기재항목
- 「49결제금액」 기재항목
- 「50수입화물관리번호」 기재항목
- 「51컨테이너번호」 기재항목
- 「52세관기재란」 기재항목
- 「53운송(신고)인」 기재항목
- 「54기간」 기재항목
- 「55적재의무기한」 기재항목
- 「56담당자」 기재항목
- 「57신고수리일자」 기재항목

나. 제35조의5(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외반출하려는 물품은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 「②대행자」 기재항목
- 「③제조사」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부호」 항목
- 「⑨C/S구분」 기재항목
- 「⑫결제방법」 기재항목
- 「⑭적재항」 기재항목
- 「⑮선박회사(또는 항공사)」 기재항목
- 「⑯선박명(또는 항공편명)」 기재항목
- 「⑰출항예정일자」 기재항목
- 「⑱적재예정보세구역」 기재항목
- 「⑳검사희망일」 기재항목
- 「㉒L/C번호」 기재항목
- 「㉓물품상태」 기재항목
- 「㉔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기재항목
- 「㉕반송 사유」 기재항목
- 「㉖환급신청인」 기재항목
- 「㉗품명」 기재항목
- 「㉘상표명」 기재항목
- 「㉙성분」 기재항목
- 「㉚송품장번호」 기재항목
- 「㉛수입신고번호」 기재항목
- 「㉜포장개수」 기재항목
- 「㉝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기재항목
- 「㉞운임」 기재항목
- 「㉟보험료」 기재항목
- 「㊱수입화물관리번호」 기재항목
- 「㊲컨테이너번호」 기재항목

**(2)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출신고서상의 5

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 "모델" 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규격" 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성분" 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

- 품명·규격의 표기는 선량한 신고인의 의무로서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HS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출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품명 또는 상표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 품명·규격을 기재함에 있어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 항목에 이를 기재하되, 그 앞에 <RM>이라고 표기한 후 기재한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명·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 신고인은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관세사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 수출신고 항목 「⑧신고구분」을 기재함에 있어 신고인은 반입대상물품이 적재 전 최종 출항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호 'B' 로 기재한다.
- 「⑧신고구분」을 'B' 로 기재 후 「⑱적재(예정)보세구역」의 보세구역코드를 입력한다.
- 「㉑물품소재지」는,
  - (우편번호)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
  - (장치장소) 주소(도로명까지) 및 보세구역명 반드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장치장부호) 해당 보세구역부호 반드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반입번호)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시 형성된 반입번호(반입계 정보) 반드시 기재
- 본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품목별 세부사항

연번	종 류	대 상	기재사항
1	중고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 「⑱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 「⑤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차량의 차대번호와 컨테이너 적입 전 및 적입 작업 후 대조 가능토록 동일 방향의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플라스틱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스크랩 및 생활폐기물 등	- 「⑱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 「⑤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폐기물의 컨테이너 적입 중간, 적입 완료 후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권한과 책임

- 신고인은 반입계 등에 기재한 반입정보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거나 누락하여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통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수출업자, 관세사, 포워딩업체)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 분	약 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로</u>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로</u>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로</u>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 EDI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고자	A..	40	M	공통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관세사의 경우 : 신고자상호, 관세사성명 기재 -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 신고자상호, 대표자성명 기재 - 기타 개인의 경우 : 성명 기재 ※ 다만, 화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주) 관세사○○○으로 기재	- 최신 관세법인 관세사 최고봉 (주)최신상사 최고봉 - 최고봉 - 최신상사(주) 관세사 최고봉
②수출대행자	AN..	28	M	공통	○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 수출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의 ○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자별로 분리하여 신고	- (주)다파라인터내셔널
- (통관고유부호)	AN	15	C	공통	○ 수출대행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관세청장(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4	C	공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제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1~(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수출자 구분	AN	1	M	공통	○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 -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A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B -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 C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 D	- A
- 수출화주	AN..	28	M	공통	○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	- (주)초일류상사
- (주소)	AN..	35	M	공통	○ 수출화주의 주소를 기재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 (대표자)	AN..	12	M	공통	○ 수출화주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최일류
- (통관고유부호)	AN	15	C	공통	○ 수출화주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 생략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4	C	공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제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1~(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AN..	13	C	공통	○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국제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외국인의 여권번호 기재시 앞자리에 "F"를 기재한 후,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13자리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 P811111234569 또는 701230-1645917 - 외국인으로 국적이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901234인 경우 : FUS1234567890
- (소재지)	AN	5	M	공통	○ 수출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5자리 번호를 기재.	- 13457
③제조자	AN..	28	M	공통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	- (주)메이저상사
- (통관고유부호)	AN	15	M	공통	○ 관세청장(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반송물품,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 제조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 메이저**1741204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 (일련번호)	AN..	4	C	공통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 9999000”으로 기재	
<b>제조장소</b>	AN	5	M	공통	○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5자리 번호를 기재.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5자리 기재	- 본사:0000, 지사:0001~(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13457
<b>산업단지부호</b>	AN	3	M	공통	○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산업단지부호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 산업단지부호가 아닌 경우 '999' 기재	- 246
<b>④구매자</b>	AN..	26	M	공통	○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 MADONA CO
- (구매자부호)	AN..	13	M	공통	○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기재 -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세관장)에서 부여받아 기재	- CNTOSHIN12347
<b>⑤신고번호</b>					○ 신고자 부호,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	- 12345-04-000123X
- 신고인부호	AN	5	M	공통	- 수출신고인 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연도	AN	2	M	공통	- 신고년도 기재	
- 일련번호	AN	7	M	공통	- 신고인이 관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로서 중복될 수 없음(일련번호(6) + 'X')	
<b>⑥세관과</b>					○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기재	
- 신고세관	AN	3	M	공통	- 신고세관을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010
- 신고과	AN	2	M	공통	- 신고과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0
<b>⑦신고일자</b>	AN	8	M	공통	○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	- 20040312
<b>⑧신고구분</b>	AN	1	M	공통	○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 H - B
<b>⑨Cβ구분</b>			X	공통	○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 생략	
<b>⑩거래구분</b>	AN	3	M	공통	○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1
<b>⑪종류</b>	AN	1	M	공통	○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A
<b>⑫결제방법</b>	AN	2	M	공통	○ L/C, 단순송금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TT
<b>⑬목적국</b>	AN	7	M	서류	○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를 기재	- JAPAN
- 코드	AN	2	M	공통	○ 해당 ISO 국가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JP
<b>⑭적제항</b>	AN	12	M	서류	○ 수출물품이 적제되는 항구·공항명을 기재	- 부산항
- 코드	AN..	5	M	공통	(통계부호표 참조)	- PUS
<b>⑮선박회사(또는 항공사)</b>	AN	25	C	서류	○ 당해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의 상호 또는 당해 항행의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사 상호	- HANJIN SHIPPING CO.LTD
- 코드	AN	4	C	공통	○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코드 기재	- HJSC, KE
<b>⑯선박명(또는 항공편명)</b>	AN	23	C	공통	○ 선박의 고유명칭(선박명을 23자리 이내의 영문으로 기재) ○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	- HANJIN SAVANNAH - KE1098
<b>⑰출항예정일자</b>	N	8	C	서류	○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기재	- 20100101
<b>⑱적제(예정)보세구역</b>	AN	8	M	서류	○ 적제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미정인 경우	- 03012202 - 03099999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세관부호+99999”를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은 적제보세구역 코드 필수 기재	
<b>⑲운송형태</b>						
- 운송수단	AN	2	M	공통	○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0BU (선박에 의한 벌크)
- 운송용기	AN..	3	M	공통	○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 중 중고자동차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LC)로 기재	- 40UL (항공기에 의한 ULD) - 50ETC (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
<b>⑳검사희망일</b>	AN	8	C	공통	○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기재 * 수출신고시점에는 수출물품이 신고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어야 함	- 20040304
<b>㉑물품소재지</b>						
- 장치장소	AN	5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	- 13345
	AN..	40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기본주소(도로명까지)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상세주소와 소재지 명칭(업체 상호)을 기재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기본주소(도로명까지) 및 보세구역명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주소와 회사명 순으로 기재 * 동일세관,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대표소재지 기재)	- 서울 강동 명일대로 123 한진보세장치장
- 장치장부호	AN	8	C	공통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계약상이수출, 반송 등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부호를 반드시 기재	- 12345678
- 반입번호	AN	15	C	공통	○ 적제지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하는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계'의 반입번호 기재	- WMCD9999999999
<b>㉒L/C번호</b>	AN..	20	C	공통	○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	- LC620-96141
<b>㉓물품상태</b>	AN	1	M	공통	○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	- N
<b>㉔사전임시개경통보여부</b>	AN	1	M	공통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경을 통보한 신고서 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 - 임시개경 미통보(임시개경대상 아님) : A - 임시개경 기통보(임시개경대상임) : B	- A
<b>㉕반송사유</b>	AN	2	C	공통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1
<b>㉖환급신청인</b>	AN	1	C	공통	○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을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 - 수출대행자/수출화주 : 1,            제조사 : 2	- 1
자동간이정액환급	AN	2	M	공통	○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 여부를 기재 - 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 AD	- AD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 미신청 : NO ※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며 ②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11" 이어야 하고 ③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와 일치	
◎서류첨부여부	AN	1	M	EDI	○ 각 란마다 모든 신고내역을 모델·규격별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첨부가 필요한 건인지 여부를 기재	- Y(서류첨부 필요)
㉞품명	AN..	50	M	공통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 ○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 해외현지조립방식(Knock Down) 물품의 경우 "CKD" 또는 "SKD"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품명을 기재 ※ 중고물품인 경우 품명 맨 앞에 "USED" 표기 ※ 반복수출입포장용기의 경우 품명 맨 앞에 "Returnable" 표기	- ASPARAGUS  - MELON JUICE  - KIMCHI REFRIGERATOR  - PART FOR CAR  - "CKD" HEADPHONES
㉞거래품명	AN..	50	M	공통	○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 ○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 학명은 CITES 해당 여부 등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MP3 PLAYER  - TAMAGOCHI - MILVUS LINEATUS
㉞상표명	AN..	30	M	공통	○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 -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연결하여 기재 ※ 상표가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신고 ※ 'BRAND'라는 단어는 기재하지 않음 ○ 상표가 없는 경우 'NO'를 기재	- CHRISTIANDIOR
㉞모델·규격 - 규격번호 - 모델·규격	N.. AN..	2 400	C C	EDI 공통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기재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 모델명 기재방법 -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임	- 01  - MODEL : 335MH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 :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모델명 기재 ○ 규격 기재방법 -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두께 등을 나타냄 - 여러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 ' / '로 구분하여 기재 ○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앞에 "<RM>"라고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내역을 기재	- W 400mm × L 1,400mm; UNFINISHED  - <RM> WIDTH:58/60" WP:POLYESTER F.YARN 75(SD)185E/INCH 86GR/YD WT:POLYESTER F.D.T.Y 150(SD) 80P/INCH 87GR/YD 2,450T/M WEIGHT-AFTER:170GR/YD
㉞성분	AN..	70	C	공통	○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	- NYLON 20%, WOOL 80%
㉞수량 - 단위	N.. AN..	14 3	C C	공통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 200.0000
㉞단가	N..	18	C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14.000000
㉞금액	N..	16	C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결제금액란의 통화종류 부호를 단가 및 금액항목 우측 ( )안에 출력	- 2,800.0000
㉞세번부호	AN	10	M	공통	○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기재 - 제35조의2에 따라 수출하는 건 중 비환급대상이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단위 기재 가능	- 8528.30-0000
㉞순중량 - 단위	N.. AN	11 2	M M	공통 공통	○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단위는 'KG'으로 기재	- 320.00
㉞수량 - 단위	N.. AN..	10 2	C C	공통 공통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제기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 10
㉞신고가격	N..	15	M	공통	○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외국에서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로 인한	- 결제금액이 CIF 10,000이고 운임이 1,000원, 보험료가 500원인 경우 : 8,500원 기재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가득액을 기재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	
㉓차대번호	AN..	20	C	EDI	○ 중고차량(임시운행차량 포함)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차대번호를 기재	- KLAJA19Y1BP8092540
- 차대관리번호 (일련번호)	AN	3	C	EDI	- 차대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	- 01
㉔송품장 부호	AN..	17	C	공통	○ 상업송품장 부호를 기재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	- 0000083964
㉕수입신고번호	AN..	15	C	공통	○ 수출신고 거래구분 '72', '84', '86', '89', '93' 등 재수출의 경우 수입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다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화주)의 원상태 수출신고 건(72)은 수입신고번호(분증번호 포함) 기재 생략 가능)	- 31010-04-1490223
- 란번호	N..	3	C	공통	-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	- 1
㉖원산지						
- 국가부호	AN	2	M	공통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	- CN
- 결정기준	AN	1	C	공통	○ 원산지 결정방법 코드를 기재 - A : 완전생산기준 - B :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기준) - C : 부가가치기준(타국원재료비공제기준) - D : 가공공정기준 - E : 조합기준 - 2 :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 4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 6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 8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에서 세분)	- A
- 표시여부	AN	1	C	공통	○ 원산지 표시여부를 기재 - N : 원산지 미표시 - Y :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 - B :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 G :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	- Y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AN	1	C	공통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삭제) ※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	- Y - N
- 발급협정명	AN	10	C	공통	○ 발급(예정)된 원산지증명서로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 선택 (통계부호표 참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Y'인 경우만 선택 - ㉓ 목적국이 FTA 협정국가인 경우에만 선택 - 일반특혜 적용 시 선택하지 않음	- RCEP
㉗포장개수	N..	6	M	공통	○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	- 3
- 종류	AN	2	M	공통	○ 수출물품의 해당 포장종류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 RO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참조)	
㉘수출요건확인						
- 일련번호	AN..	2	C	EDI	○ 수출요건확인 일련번호를 기재	- 01
- 구분	AN	1	C	공통	○ 수출요건별 구분코드를 기재 - A : 수출승인서 - B : 수출추천서 - C : 검사증 - D : 검역증 - E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또는 상황허가서	- D
- 요건승인번호	AN..	20	C	공통	○ 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확인서의 허가 및 승인 번호 ○ 수출승인서 기재 가.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수출입구분 1자리 - 기관고유코드 3자리 - 산하기관코드 2자리 - 연도 2자리 - 일련번호 7자리 - 체크디지트 1자리 나.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승인면제물품인 경우에는 대외 무역관리규정의 해당 사유항목을 기재	- ESJ00309000801 - 1127119900010686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추천 대상인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수출 승인의 면제 중 영 제27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 면제로서 "가"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7-2-다-가-1
- 발급서류명	AN..	35	C	공통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 (상황허가서 포함) 가. 허가구분자리(1자리) - A : 개별수출허가 - B : 개별수출허가 면제 - C : 사용자포괄수출허가 - D : 품목포괄수출허가 - E : 전략물자비해당판정 나.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6자리)	-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 발급일자	AN	8	C	EDI	○ 수출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	- 2003-09-01
- 법령부호	AN	2	C	EDI	○ 수출요건확인관련 법령부호(통계부호표 참조) ※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4개만 출력	- 13
㉙총중량	N..	11	M	공통	○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용기 포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4817.2
- 단위	AN	2	M	서류	○ 단위는 'KG'으로 기재	- KG
㉚총포장개수	N..	6	C	공통	○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기재 ※ 운송용기(예 Pallet) 수량으로 기재하지 않음 ※ 수출신고서상 총포장개수의 단위는 1란의 포장종류 부호가 기재됨	- 300
㉛총신고가격	N..	15	M	공통	○ 원화 :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4,000,000
	N..	14	M	서류	○ 미화 :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	- 3,044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 이하는 반올림) ※ 환산율은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	
㉔운입	N..	12	C	공통	○ 결제금액에 운입이 포함된 경우 운입을 원화로 기재	- 6,940,224
㉕보험료	N..	12	C	공통	○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기재	- 8,847,178
㉖결제금액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20코드를 기재 (INCOTERMS 202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11개)	- CIF
- 인도조건	AN	3	M	공통		
- 통화종류	AN	3	M	공통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 USD
- 결제금액	N..	18	M	공통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 결제금액에 운입,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	- 2,990.00
㉗환율	N..	8	M	공통	○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	- 1163.9100
㉘수입화물관리번호	AN..	18	C	공통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 대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 - 무적화물은 "NO"를 기재 - 화물관리번호는 1개만 기재	- 03MSCUD50A90016003
- 구분	AN..	2	C	공통	○ 전량, 분할, 여러건 반송 등의 구분 기재 - A : 화물 전량을 반송 - B :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 - C : 여러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 A
㉙컨테이너번호						
- 적입여부	AN	1	M	공통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 'Y' 또는 'N'으로 기재	- Y
- 컨테이너번호	AN..	11	C	공통	○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화물에 한함	- CKLU2005013
㉚신고인기제란	AN..	500	C	공통	○ 관세사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서는 보세구역 운영인, 컨테이너 작업업체 연락처 등 기재	- 수출자 : 제조/섭유, 의류
㉛세관기제란			X		○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예 선적확인사항 등)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㉜운송(신고)인	AN..	30	C	공통	○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한라통운(주) 이순신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에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 등 당해 수출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기재방법 - 운송(신고)인이 신고자인 경우 : "신고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수출자인 경우 : "수출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제조자인 경우 : "제조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일반업체인 경우 : 상호와 성명을 기재	
㉝기간	AN	16	C	공통	○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YYYY/MM/DD로 기재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운송 예정기간을 기재	- 2004/01/01~2004/01/30 - YYYY/MM/DD
㉞적계의무기간			X		○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계의무기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음	- 2003/12/17
㉟담당자			X		○ 세관의 접수 담당자	- 990101 (홍길동)
㊱신고수리일자			X		○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 2003/11/17